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2901	임오경의원 등 10인	'25.9.1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2.18.)
	2213040	조계원의의원 등 12인	'25.9.1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2.18.)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나.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국어문화원”을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 연합회의 설립·운영’으로 한다.

-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6. (생 략) ⑥ ~ ⑩ (생 략)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u> <u>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u> <u>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u>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의</u> <u>균형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u> <u>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u> <u>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u> <u>(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u> <u>할 수 있다.</u> ③ <u>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u> ④ <u>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u> <u>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u> <u>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u> <u>을 준용한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국어문화원</u>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u>국어문화원</u>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u>경비를</u>----- -----.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u>방법, 연합회의 설립·운영</u>----- -----.
--	---